

제357회 임시회  
2017. 7. 12.(수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6월 26일
-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8일

## 3. 제안이유

- 도정 각 분야에서 자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도정 정책자문단을 행정수요에 맞추어 운영하고자 함

## 4. 주요내용

- 자문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명칭 개정 (안 제6조제1항제4호)
  - 창조경제분과위원회 → 경제분과위원회
-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 (안 제11조)
  - 2018년 12월 31일 → 2021년 12월 31일

## 5. 검토의견

- 도정 정책자문단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 정책의 입안·추진 등에 있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민·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2월 조례제정을 통해 설치된 자문기관임.

- 또한,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총 7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, 100명의 위원들이 각 분과에서 활동함.

※ 분과위원회 구성현황 : 7개 분과 100명 / (3기)2015.7.6~2017.7.5.(2년)

계	공공혁신	복지·여성	문화·관광	창조경제	바이오·환경	농·어업	지역균형발전
100	12	18	12	20	12	12	14

-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보면,
  - 안 제6조는, 자문단 내 분과위원회 중 ‘창조경제분과위원회’의 명칭을 ‘경제분과위원회’로 변경한 것으로,
    - 자문기관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서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, 분과위원회 명칭 개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지역별 특화된 창조경제의 범위를 넘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경제 영역의 흐름 전반을 수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명칭을 보편적 용어인 ‘경제분과위원회’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됨.
  - 안 제11조는,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한 것으로,
   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의3에 따라,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 본 조례안에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    - 도정정책자문단은 제3기의 활동현황을 볼 때, 임기 2년 동안 30여 건의 **도정개선 연구과제발표 및 도의 주요업무계획 자문 등을 통해** 왕성한 활동을 보인 바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,
    - 또한, 제3기 자문단의 임기가 2017년 7월5일 종료 후 새롭게 구성될 제 4기 자문단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2년의 임기를 부여할 수 없게 됨. 따라서, 제4기 자문단의 2년 임기 보장 측면에서도 유효기간의 연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[참고자료]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현황

### □ 도정 정책자문단 개요

- 운영 근거 :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
- 운영 목적 : 도정 주요정책 전문가 자문 및 입안추진 등 민관협력 강화
- 주요기능 : 자문·협의
  -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및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
  - 새로운 정책, 행정개선 및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·해결방안에 관한 사항
  -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자문단 임기 : 2년(연임가능)
- 추진현황
  -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제정 : 2011. 2. 11.
  - 제1기(5개 분과 70명, '11. 3.29.) / 제2기(5개 분과 70명, '13. 5.30)
  - 제3기(7개 분과 100명, '15. 7. 6.~ '17. 7. 5.)

### □ 제3기 도정 정책자문단 구성현황

- 인 원 : 7개 분과 100명

구분	계	공공혁신	복지·여성	문화·관광	창조경제	바이오·환경	농·어업	지역균형발전
위원수	100	12	18	12	20	12	12	14
(여성)	(33)	(2)	(13)	(5)	(4)	(2)	(3)	(4)

- 임 기 : 2015. 7. 6. ~ 2017. 7. 5. (2년)
- 주요 자문내용
  - 주요 업무계획 수립 시 신규사업 자문 ('16. '17.)
  -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, 대선공약 건의과제 발굴, 경제위기 상황 등 자문
  - 도정 개선 연구과제 발표 : 30건('15년 16건, '16년 14건 : 워크숍 개최 시)
  - 도정 주요현장 방문(2회), 각종 위원회 참여 및 자치연수원 등 강의